

광주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가단5236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C

3. D

소송대리인 E

변론 종결 2020. 11. 18

판결 선고 2021. 1.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과 F 사이의 별지 목록 저나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8.

10. 31. 접수 제155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D와 F 사이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F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선등기소 2018. 11. 14. 접수 제162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8. 8. 9. 접수 제112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F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차전8083 양수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6. 14. 'F는 원고에게 133,933,345원 및 그 중 68,199,802원에 대하여 199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와 피고들 사이의 법률행위 등 피고 A은 F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F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척 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 보건대, 을 1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0.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G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2018. 10.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993. 11. 3.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H,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8 카단 2999호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93카합1549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이 법원 2018카합231가 압류취소소송을 거쳐 2018. 11. 8. 취소결정이 되어 2019. 1. 4. 말소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경매를 신청하고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가압류 취소소송을 거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최종적으로 가압류가 말소된 2019. 1. 4.경 무렵에는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이는 2019. 1. 4.로부터 1년이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6. 30.에야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선희

별지